이 자료는 2020년 9월 3일(목) 14:00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 시작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

2020. 9. 3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 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Ⅱ. 뉴딜펀드 조성·운용 방안 4
1. 기본 방향 5
2. 세부 내용 6
①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6
②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9
③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11
Ⅲ.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12
Ⅳ. 향후 계획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
1. 추진 배경

- ◇ [●]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, ^②시중 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, ^③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'한국판 뉴딜펀드' 조성 등 다양한 금융지원 추진
- [] [뉴딜의 성공적 추진] 코로나19 이후 경제·사회 변화 대응 및 위기 극복을 위해 "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"(7.14)" →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될 필요
 - * "한국판 뉴딜 보고대회(7.14)"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'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' 조성이 제안됨
 - 특히,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중심의 "자생적인 뉴딜생태계^{*}" 구축 필요
 - * 금융을 통해 민간자금이 뉴딜분야에 투입될 경우, 레버리지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(leverage effect) 과정에서 실물경제 활성화 가속화 기대
- ② (시중유동성의 생산적 활용)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시중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·활용할 필요성 확대
 - * M2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: ('18.6) 6.1 ('19.6) 6.8 ('20.6) 9.9 (최근 10년 평균) 6.4
 - 최근 급증한 시중자금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지속 유입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,
 - 경기회복 및 금융중개기능을 활용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뉴딜사업 등 경제·사회구조 전환에 긴요한 생산적 분야로 유도
- ③ [성과 공유] 뉴딜 투자('20~'25년간 총 160조원)에 따른 성과를 다수의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
 -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,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·제공

참 고

뉴딜펀드 관련, 현재 운용 중인 유사 펀드 현황

- ◇ 뉴딜 펀드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는 펀드는 크게 ^①모태펀드·성장 사다리펀드 등 정책펀드, ^②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, ^③필승코리아펀드(소부장)와 같은 민간 자발적인 테마펀드 등 존재
- ① [정책펀드*] 정부·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자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,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투자
 - * 재정의 위험부담 등을 통해 특정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
 - 母子펀드 형식으로, 母펀드로는 모태펀드, 성장사다리펀드 등이, 子펀드로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, 소부장 벤처펀드 등 조성·운용 중

<	주유	정책펀드	혀화	(다위	조위)	>
_	$-\mu$	~~T'—	775	(, ' T I		

펀드명	母펀드 출자자	규모		주요 투자대상
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	중기부 등	24.9	* '05~'19년간 조성규모	• 창업 초기기업 • 중소·벤처기업 등
스마트 대한민국 펀드	중기부 등	6.0	* '20~'25년간 조성계획	• 비대면·바이오·그린뉴딜 분야 스타트업기업
소부장 벤처펀드	중기부	0.1	* '20년 조성계획	· 소부장 분야 우수 중소·벤처기업
성장사다리펀드	산·기은 등	11.6	* '13~'19년간 조성규모	・창업 초기기업 ・스케일업기업 등
소부장 투자전용펀드	산은	0.4	* '20년 조성계획	•소부장 관련 기업

- ② [인프라펀드'] ^①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(민투법)」에 근거한 인프라펀드와 ^②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자본시장법)」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존재
 - * 투자대상이 스마트 상하수도,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뉴딜 인프라사업 포괄

< 인프라펀드 유형별 비교 >

구분	민투법상 인프라펀드	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(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 중심)
주무부처	• 기재부(금감원 등록, 기재부 통지)	• 금융위(금감원 등록)
투자대상	• 한정적 *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운영 법인 한정 → 다만, 최근 위험분산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이외 다른 자산 투자 (펀드 전체자산의 30% 이내)를 허용하기로 旣발표('20.7.23)	• 광범위 *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 운영 법인, 선박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, 해외자원개발법상 자원개발 전담회사 등
운용규모 ('19년말)	・총 10개(5.9조원) 운영 * 공모 1개(2.1조원), 사모 9개(3.8조원)	・총 576개(47.8조원) 운영 * 공모 7개(0.1조원), 사모 569개(47.7조원)

- ③ (민간 테마펀드')「NH-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^{**}」등 민간의 소부장 펀드와 같이 시장 스스로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
 - * 민간이 수익성 제고, 투자자 수요 등을 감안, 특정분야:업종 등에 투자하는 방식
 - ** NH-아문디자산운용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를 목적으로 '19.8월 펀드 설정 → '20.8월 현재 약 1,900억원 규모 운용 중

<참고> 뉴딜펀드 관련 논의 경과

- ◇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**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** 제안(7.14일,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)
- ◇ 이후, 뉴딜펀드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, 여당, 관련 전문가 등과의 면밀한 검토 및 논의* 진행
 - * 뉴딜펀드 정책간담회 개최(8.5일, 더불어민주당 K-뉴딜위원회 주최), 정부내 관계부처·기관간 실무협의·업계 간담회(수시 개최) 등을 통해 뉴딜펀드 조성 방안 논의 지속
- ◇ 관계부처·기관간 협의를 거쳐 「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」논의 (8.20일, 부총리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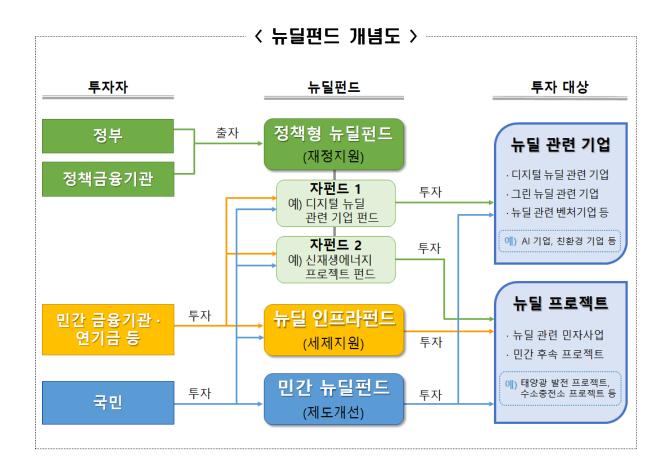
II. 뉴딜펀드 조성·운용 방안

- ◇ 뉴딜펀드는 "정책형 뉴딜펀드" 신설 + "뉴딜 인프라펀드" 육성 + "민간 뉴딜펀드" 활성화의 [●]3가지 축으로 추진하고,
 - ²민·관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, ³국민과의 **뉴딜**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 설계에 중점

〈 뉴딜펀드 체계 〉 **1** 정책형 뉴딜펀드 + 뉴딜 인프라펀드 + 민간 뉴딜펀드 ⇨ 3가지 축 기본 방향 ② 민·관의 역할 분담 ❸ 국민과의 성과 공유 **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** 등 **■(정부) 재정 통한 위험 부담**, 세부 공모 활성화 세제지원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추진 ■ **민간의 자율적 펀드 조성** 유도 방향 **■(민간)** 자율적 **상품 개발** ■퇴직연금 연계 확대 **①** 유형 뉴딜 인프라펀드 정책형 뉴딜펀드 민간 뉴딜펀드 ■정부 등 출자 + ■ 정책형 뉴딜펀드 ■ 민간의 자발적 2 조성 민간 자금 매칭 **子펀드** 방식 + **투자처 발굴** 및 방안 민간 인프라펀드 펀드 결성 **■ 재정**을 통한 ■ 세제지원 ■시장 여건 조성 응 위인 체계 * 현장애로 해소 지원 후순위 출자 ■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 개선 * 투자 위험 부담 세부 구조 ■뉴딜 프로젝트 + ■ 뉴딜 인프라사업 ■ 뉴딜 프로젝트 + 투자 뉴딜 관련 기업 뉴딜 관련 기업 4 대상 *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■ 공모방식 확산 ■수요 맞춤형 * 민간 공모펀드가 * 공모인프라펀드에 성과 공유 성과 **⑤** 공유 정책형 뉴딜펀드 한해 세제혜택 부여 * 민간에서 고수익 또는 子펀드 결성에 참여 안정적 수익 창출이 ■퇴직연금 연계 ■ 「귀다하다」 조성 가능한 펀드 자율 설계

1. 기본 방향

- ① (3축 설계) [●]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+ ^②뉴딜 인프라펀드 육성
 + ^③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3가지 축으로 설계
- ② (민관 역할 분담) 정부는 재정·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,
 - **민간**은 **자율성·창의성**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**다양한 상품 설계**
- ③ (국민 성과 공유)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펀드를 활성화하여 뉴딜사업 투자 성과 공유에 주력



2. 세부 내용

1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

- ◇ "정부·정책금융기관 출자"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,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총 20조원 규모의「정책형 뉴딜펀드」신설
- ① **(조성방안)** ^①정부·정책금융기관(산은·성장사다리펀드)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母펀드 조성 → ^②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구퍾드 결성
 - ① (母펀드) 공공부문이 5년간("21~"25) 7조원(연 1.4조원) 조성(전체의 35%) * (정부) 5년간 3조원(연 0.6조원), (산은·성장사다리펀드) 5년간 4조원(연 0.8조원)
 - ② (子펀드) 母펀드 출자(35%)와 민간 매칭(65%)을 통해 5년간('21~'25) 20조원(연 4조원) 규모의 子펀드 결성

< 정책형 뉴딜펀드 재원조성 방안 >

투자자	투자목적	비고	재원규모
정부	·민간 자금의	.ETL이칭 ㅂ다	5년간 3.0조원 (연 0.6조원)
정책금융기관	마 중물 역할	·투자위험 부담	5년간 4.0조원 (연 0.8조원)
은행·연기금 등	ETL 스이 차츠 드	·子펀드 조성시 민간 매칭	EI=17 120조인(어 26조인)
일반 국민	·투자 수익 창출 등	·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등	5년간 13.0조원 (연 2.6조원)

- [2] [유인구조] 母펀드의 子펀드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,
 - 공공부문의 **子펀드별 매칭비율**(평균 35%), 정부의 **위험부담 수준**(기본 10%) 등 세부사항은 **子펀드 성격·정책적 중요성**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③ **(투자대상)** 민간의 창의성·자율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뉴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[●]투자대상을 폭넓게 정의하되, [●]지원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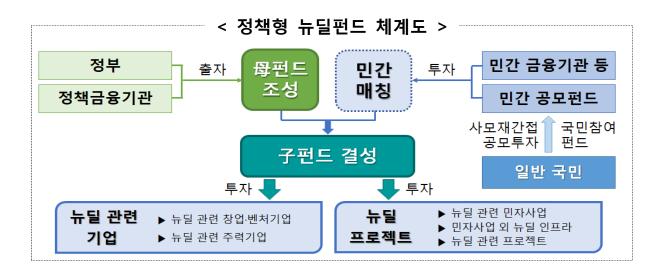
① (투자대상 범위) ^①뉴딜 프로젝트와, ^②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 넓게 허용

<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(예시) >

- ① 뉴딜 관련 민자사업 (예: 그린 스마트 스쿨, 수소충전소 구축 등)
- ②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(예: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,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)
- ③ 뉴딜 관련 프로젝트 (예: 수소·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)
- ④ 뉴딜 관련 창업·벤처기업,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
- < 정책<u>형 뉴딜펀드 투자방법 (예시) ></u>
- ㅇ 주식(구주 포함) 및 채권인수, 메자닌 증권 인수, 대출 등
- ② (투자기준 마련)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,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

구분	분류 기준 (예시)
디지털 뉴딜	■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운영 중인 혁신성장 대출기준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이 큰 분야(첨단제조·자동화, 정보통신, 센서·측정, 지식서비스 등)
그린 뉴딜	■ 녹색인증기업, 환경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업, '기후기술 분류 체계'에 따른 기후기술 보유기업, 에너지산업특수분류 포함기업 등

- ④ 【성과공유】 사모재간접 공모펀드* 방식을 활용하여 일반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, 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 우대 추진(예: 가점 부여)
 - *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→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구펀드 조성에 참여 → 구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·프로젝트에 투자
 -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'국민참여편드' 조성



참 고

정책형 뉴딜펀드 세부 운용방안

- □ (투자형태) 뉴딜분야에 대한 효과적 자금공급을 위해 ¹ 프로젝트 펀드, ²블라인드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
 - (프로젝트펀드*)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 기간 및 위험추구 정도 등에 따라 자금을 선별하여 모집·투자
 - * 프로젝트(기술인수, 전략적M&A 등) 선정 후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하는 펀드로, 투자대상이 명확하며 현금흐름이 예측가능한 기업 및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
 - ② (블라인드펀드*) 뉴딜분야 관련 산업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장자금 공급
 - * 자금모집 후 다수의 뉴딜분야 프로젝트·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펀드로, 현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아도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에 용이
- □ (편드구조) 뉴딜분야별 투자리스크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 등 子펀드 구조를 차별화

< 뉴딜 분야별 子펀드 구조 (예시) >

그린에너지 펀드 스마트물류 펀드 이차전지 펀드 뉴딜분야별 - 장기 투자 - 중기 투자 - 단기 투자 사업상리스크 평가(예) - 투자위험 高 - 투자위험 中 - 투자위험 低 선순위(개인투자) 민간자금 60% 민간자금 70% 子펀드 민간자금 85% 정책자금 비중(예) 정책자금 40% 정책자금 30% 정책자금 15%

- □ (편드주관) 보다 효과적인 뉴딜펀드 운용 등 뉴딜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경험이 축적된 성장금융·산은이 주관
- □ (가이드라인) 현재 정책금융기관이 운영 중인 「혁신성장 공동 기준 매뉴얼」을 정비·재분류하여 우선적으로 뉴딜 투자에 활용*
 - * 既 마련된「2020 혁신성장 공동기준(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)」중 디지털/녹색 관련 선정 기준을 우선 활용하고, 이후 정부 투자 가이드라인 활용

2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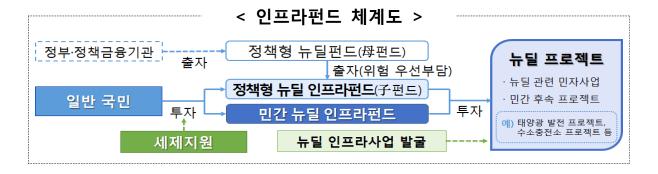
- ◆ 에제지원 확대, ^②정책형 편드를 통한 위험부담 및 ^③양질의
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
 있는 「뉴딜 인프라펀드」육성
- ① **[조성방안] [●]정책형 뉴딜펀드**, ^❷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(旣운용 중인 펀드* + 신규 펀드) 등을 활용하여 조성
 - * 현재 민투법상 인프라펀드(10개, 5.9조원)와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중사회기반시설 투자 펀드(576개, 47.8조원)
- ② [유인구조]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투자 유인 제공
 - (세제지원) '뉴딜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'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지원
 - (대상) 뉴딜 인프라¹⁾에 일정비율(예: 50%) 이상 투자하는
 공모 인프라펀드²⁾
 - * 1)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뉴딜 인프라 범위를 규정하고, 심의를 통해 지속 보완 2) 민투법상 인프라펀드,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·부동산펀드,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
 - (규모)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(9%)
 - (재정지원)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시 母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 우선 분담
 - 특히,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¹⁾, 해지시 지급금²⁾ 등을 통해 위험 부담 지원
 - * 1) 민자사업 시행자 대상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 중(한도 5,000억원) → 인프라 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 제공 시, 산기반신보를 통해 보증 지원 가능
 - 2) 민자사업 추진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, 旣투입자금 등을 환급
- ③ (투자대상)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되 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, 이를 위해 양질의 뉴딜 인프라사업 지속 발굴

< 뉴딜 인프라사업 (예시) >

디지털 뉴딜 관련	그린 뉴딜 관련
·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·스마트 공동물류센터·데이터센터	•육상·해상풍력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 •그린 스마트 스쿨
ㆍ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지원시설	・수소충전소 확충

< 참고 > 해외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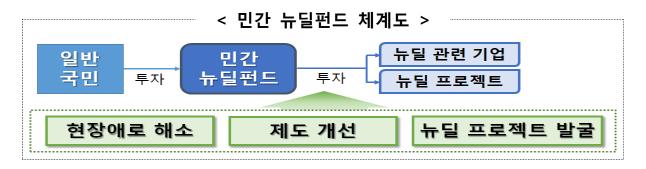
- ◇ (데이터센터) 클라우드 산업 성장으로 외부 데이터센터를 리스하는 방식(코로케이션)
 확산 → 에퀴닉스, 디지털리얼티 등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임대 기업 고속 성장 중*
 *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('14~'19년): (에퀴닉스) 18%, (디지털리얼티) 15%
- ◇ (5G망) 미국 4대 통신사는 5G망을 임대 사용 → American Tower^{*} 등 민간의 셀타워 리츠 펀드(통신사에 통신타워 임대를 통해 수익 창출) 성장 지속
 - * American Tower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('14~'19년): 13%
- 4 (성과공유) 기관투자자 중심(사모)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 확산 유도
 - 세제 지원 대상을 공모펀드로 한정하고, 민자사업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子펀드 운용사 선정 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 우대 추진(예: 가점 부여)
 - * 민투법상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旣발표(7.23)된 규제완화 병행 추진: 차입한도 상향(자본금의 30→50%), 투자대상 확대(자산의 30%내 사회기반시설 외 투자 허용) 등
 - **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**를 위한 **제도적 기반을** 마련*하여 **일반 국민의 인프라펀드 투자 확대 기반 마련**
 - *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 추진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)
 - 구체적인 펀드 설계시 국민의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**존속** 기간이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(5~7년) 개발도 검토



민간 뉴딜펀드 활성화

3

- ◇ 민간 창의성, 자율성에 기반한 「민간 뉴딜펀드」 활성화를 통해 시장 내 뉴딜펀드 붐업 여건 조성
- ① **(조성방안)** 금융회사가 高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,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·공급
- [2] [유인구조]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 조성
 -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'현장애로 해소 지원단'을 구성하여 뉴딜 사업 투자 관련 구체적인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*
 - * (예)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 민원 제기 →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 추진
 - **RE100¹⁾·ESG 투자 활성화²⁾,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개선** 등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**제도 개선 병행**
 - * 1) (예)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계약(제3자 PPA 등) 허용 추진 등
 - 2) (예)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(Environmental, Social, Governance) 투자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
- ③ (투자내상) ⁰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²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
 - 뉴딜업종 內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**다양한 "뉴딜지수"를** 개발·활용(한국거래소)하고, 관련 ETF·인덱스펀드 등 "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" 출시 유도
- ④ (성과공유) 국민은 시장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"高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"등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
 - * (예) [수익성 중심] 데이터 활용 AI 개발기업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 [안정성 중심]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



Ⅲ.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

- ◇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, 민간 금융 회사들의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완화
- □ (정책금융 역할 확대) 뉴딜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고, 혁신기업 선정 등을 통해 지원여건 조성
 - 뉴딜분야 **자금공급 비중**을 '25년까지 **12**% 이상 수준으로 확대
 - * **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**(산·기·수은 및 신·기보 기준) : ('19년) 8.4% → ('22년) 10% → ('25년) 12%
 - 뉴딜기업 대상 대출프로그램, 특별보증 등을 통해 저리대출 공급 (5년간 100조원)
 - * ①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(산은, 1조원)
 - ②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 공급(산은·기은·수은, 69조원)
 - ③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(신보, 30조원)
 - 「혁신기업 1,000」 선정시 "뉴딜 테마" 세션 신설을 통해 뉴딜분야 기업 중점지워 여건 조성
 - * '20.4분기 중 선정예정인 총 「168개+α」 혁신기업 중 일정수준(예: 60% 이상)을 **"한국판 뉴딜"** 관련 기업으로 선정·발표할 계획
- □ (민간투자 여건 개선) 뉴딜분야에 대한 민간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
 - 금융회사들의 뉴딜분야 프로젝트·기업에 대한 **자금공급 확대를** 제약할 수 있는 감독규제 등을 일부 완화
 - * (은행)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 투자에 대해 낮은 BIS 위험기중치 적용 (보험) 수익성·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 위험계수 하향조정
 - (증권)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초대형IB 증권사)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,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% 가중치 적용(적극적 해석 운용)

- □ (뉴딜 PF유동화 지원)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(PF-ABS)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 강화
 - 현행 민투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
 유동화보증 시 보증료 인하(0.2% → 0.1%) 추진
 - 여타 뉴딜 인프라 사업*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(뉴딜지원 계정)을 신설하여 PF-ABS 신용보강 제공 추진
 - * 현재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인프라(정부 발주 非사회기반시설, 민간 발주 뉴딜 프로젝트) 건설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신보 등 활용 불가
- □ (금융권의 뉴딜지원 확대) 금융회사들의 뉴딜 분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등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

< 참고 > 5대 금융지주 뉴딜분야 금융지원 추진 계획(9.3일 발표, 신한지주는 9.7일)

- ⇒ 5대 금융지주회사들은 정부의 「한국판 뉴딜」 정책에 호응하여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 이상의 자금을 대출·투자할 계획
- (신한) 스마트시티, 스마트그리드 산단, 신재생에너지
- (KB) 그린스마트 스쿨, SOC디지털화, 그린 리모델링, 그린에너지,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
- (NH) 신재생에너지, 농촌 태양광 사업,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등
- (하나) 스마트 산단, 5G 설비투자 및 데이터 센터, 스마트 도시·물류체계 조성 지원 등
- (우리) DNA(Data·Network·AI) 생태계 활성화, SOC 디지털화, 비대면 산업, 그린에너지
-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**디지털금융 지원을 강화**하는 한편,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 등 **뉴딜분야 성장 생태계 조성**에 기여

IV. 향후 계획

◇ 뉴딜펀드가 빠르게 민간에 안착되고 금융권의 뉴딜분야 투자가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

가. 뉴딜펀드 조성·운용

- □ (조속한 상품출시 준비) 뉴딜펀드가 조기 출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 등을 신속 추진
 - 재정 수반 사항은 '21년도 예산안에 반영*(9.3일 국회 제출)하고, 그 이전까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성·운영
 - *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'21년 정부 출자분 0.6조원 반영
 - 조세특례제한법, 민투법 등 관련 법령은 금년 중 개정
 -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
 - **금융상품 개발** 등 민간의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뒷받침
- □ (**사업설명회 개최**)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중 사업설명회 추진
- □ (사업발굴) 민간의 자발적인 뉴딜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^①뉴딜 사업 중 민자 추진 가능 사업 및 ^②수익성이 높은 뉴딜 관련 민간프로젝트 지속 발굴

나.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

- □ (정책금융 역할 확대) 뉴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, 뉴딜테마의 혁신기업을 조속히 선정
- □ (민간투자 여건 개선)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
- □ (뉴딜 PF유동화 지원) 보증료 인하, 신보 특별계정 신설 등 PF-ABS 발행 활성화를 위한 작업 마무리

참 고

세부 추진일정

정책 과제	추진시기	추진기관
【 정책형 뉴딜펀드 】		
▪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가이드라인 마련	~9월	금융위 등 관계부처
▪'21년 정부·정책금융기관 출자분 반영	~12월	기재부 금융위 (산은 등)
■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	′21.1월∼	금융위 (산은 성장금융)
▪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 선정	~′21년초	금융위 (산은 성장금융)
▪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·운용	′21년∼	금융위 (산은 성장금융)
【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】		
▪ 뉴딜 인프라 기준 및 뉴딜 인프라 심의제도 마련	~9월	기재부 등 관계부처
▪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	~12월	기재부
• 공모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를 위한 민투법 개정	~12월	기재부
■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(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)	~'21년초	고용부 등 관계부처
• 양질의 뉴딜 인프라사업 발굴	지속	기재부 등 관계부처
【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】		
▪ 뉴딜 프로젝트 분야별 사업설명회	10월 ~	금융위 등 관계부처
▪ 뉴딜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기반 마련	~12월	금융위 (한국거래소 등)
▪ 현장애로 해소지원단 운영	지속	기재부 등 관계부처
▪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	지속	기재부 등 관계부처

나.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

정책 과제	추진시기	추진기관
【 정책금융 역할확대 】		
▪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	′21.1월~	금융위 (산은)
▪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 공급	′21.1월~	금융위 (산·수·기은)
▪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	′21.1월~	금융위 (신보)
• 혁신기업 1,000 선정(뉴딜테마 세션 신설)	~12월	금융위
【 민간투자 여건개선 】		
■ 뉴딜분야 PF투자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 적용 (공공부문 위험분담 등 대상 PF투자에 대해 필요시 유권해석)	수시	금융위 금감원
▪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 위험계수 하향조정	~′21년초	금융위 금감원
■ 종합금투사업자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	~12월 (입법예고)	금융위 금감원
■ 증권사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 가중치 조정	~12월	금융위 금감원
【 뉴딜 PF유동화 지원 】		
■ 민투사업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 신보의 유동화 보증료 인하	~'21.1월	기재부
■ 신보 특별계정 신설 및 PF-ABS 신용보강 제공 추진	′21년 초~	금융위 (신보)